

성북의 미래, 현장에서 답을 찾다!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문화체육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를 기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7개의 법령에 의거한 대상자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구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 추가 규정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결과

- 기 간 : 2021. 9. 30.(목) ~ 10. 20.(수)
- 방 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- 결 과 : 의견제출 없음

2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첨부

3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평가대상 아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1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1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3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

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관람료의 면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 1. ~ 5. (생략) 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	제7조(관람료의 면제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 는 사람 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호에 해당하는 사람 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. 「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
<신설>	
<신설>	
<신설>	
<신설>	
<신설>	
<신설>	

<신 설>	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<신 설>	1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 ~ 9. (생 략)	13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
	14. ~ 16. (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)

[관계법령]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67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86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.

1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2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3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제23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5조(고궁 등의 이용)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를 준용한다.

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10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8조의3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1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2.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□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제59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2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.

1. 5·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
2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5·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3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
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제74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.

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8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가유공자"는 "특수임무유공자"로, "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"은 "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"으로 본다.

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5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의사상·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.

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7조의2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법 제15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의사상자. 다만,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.

2.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. 다만,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.
3.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
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

제15조의4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,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4. 작성자

북지문화국 문화체육과장 홍 지 현